

2024년 은평구 아이돌보미 1차 정기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업무	지원자격
은평구 아이돌보미	00명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및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필수 ※ ①~④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지원 가능 ① 아이돌보미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이 가능한 신체·정신 건강한 활동 희망자 ③ 은평구가족센터의 일정에 따라 바로 수행이 가능한 자 ④ 자격증D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사, 의사, 간호사)
			우대 ① 취업 취약 계층 및 경증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② 만 36개월 미만 영아돌봄 가능한 자 ③ 은평구 전 지역, 전시간대 활동 가능한 자
			지원 불가 ① 「아이돌보미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구직급여 등 아이돌보미 활동 등의 제약이 있는 자 ③ 신청서류 허위 제출자

2. 모집일정

구분	지원기간 (서류접수)	서류전형 발표일정	인적성검사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일정
모집일정	02.15.(목)~03.01.(금)	03.04.(월)	03.06.(수)	추후공지	추후공지
※ 인·적성검사에 동의하시는 경우 면접전형 참여가 가능하며, 검사결과에는 참고용으로 비공개 됩니다.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전화 접수는 불가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속 → [지원 및 양성] 클릭 → [모집공고] 클릭 (은평구 공고 확인 후 지원) → 필수자료 작성 후 첨부(아이돌보미신청서,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본) → 지원 ※ 모집계획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지됩니다.					

3. 신청 시 제출서류

- 가. (필수)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홈페이지)
- 나.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홈페이지)
- 다. (필수)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라. (필수)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마. (해당자)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바. (해당자)경력증명서 1부

4. 선발 후 제출서류

- 가.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홍부방사선 검사, B형간염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나. 급여통장(신한은행) 사본 1부
- 다.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라.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위한 서류
- 마.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5. 선발 후 양성과정

구분	보수교육		현장실습		신입오리엔테이션	
	일정	장소	일정	장소	일정	장소
최종 합격자	추후공지	추후공지	추후공지	추후공지	추후공지	은평구가족센터 (1센터)
	※ 양성교육대상자(80시간), 보수교육 대상자 (16시간) 교육 이수 ※ 교육비: 양성교육비 20만원(양성교육 대상자) 현장실습비 2만원(보수교육대상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납부 (단, 양성교육비의 경우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환급됨) ※ 위의 일정은 센터 및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직무 및 급여

구분	내용
공통	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나.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1) 비상약품 비치 요청,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응급처치 2) 서비스제공기관에 해당 내용 발생 시 보고 다. 아동학대 예방 및 성범죄 등 신고의무 수행 1)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 경우에는 즉시 신고 2)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신고
영아 종일제	가. 돌봄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나. 활동범위 1)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2) 돌봄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세지 등 통해 전달
시간제	가. 일반형(기본형) 1) 돌봄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 활동범위: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 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나. 종합형 1) 돌봄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2) 활동범위: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추가(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결레질하기, 아동식사



은평구가족센터



	<p>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p> <p>※ 만 36개월 미만 영아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함</p> <p>가. 돌봄수당(기본시급): 10,110원(2024년 기준)</p> <p>1)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경력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추가 지급</p> <p>2) 서비스유형, 아동 추가 등에 따라 기본시급에 가산하여 추가 수당 지급</p> <p>나. 명절수당</p> <p>1) 기본상여금: 연 20만원 (1회 10만원) 지급</p> <p>2) 가산상여금: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경력가산상여금 지급</p> <p>다. 기타</p> <p>1)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단,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p> <p>2)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적립금 적립</p>
급여	

7. 기타 유의사항

- 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 나. 선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라.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8. 문의

- ※ 은평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 ☎ 02-376-3752 으로 전화주세요.
- 평일 월~금 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 붙임 1.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1부
2. 아이돌봄 신청서 1부
3.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출처: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72